

# 투자설명서(안)

## 투 자 설 명 서(안)

이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회 사 명 : 주식회사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전 화) : 02-528-0569  
대표자사내이사 : 김 택 중
- 모 집 가 액 : 5,000원
- 모집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우선주식 5,386,000주  
보통주식 2,248,400주
- 청 약 기 간 : 2024. . .
- 청 약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 납 입 기 일 : 2024. . .
- 납 입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이 투자설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원금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 모집의 개요

### I. 모집의 요령

#### 1. 모집주식의 내용

구 분	종 류	모집주수 <sup>주1)</sup>	주당발행가액	모집총액	비고
모집(사모)	기명식 우선주식	5,386,000주	5,000원	26,930,000,000원	기금 우선주
	기명식 보통주식	2,248,400주	5,000원	11,242,000,000원	민간 보통주
	합계	7,634,400주	-	38,172,000,000원	-
발기인출자 <sup>주1)</sup>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	5,000원	300,000,000원	-

주1) 2024.05.02. 회사 설립 시 출자한 발기인출자분(대한토지신탁㈜, 60,000주)

#### 2. 모집의 방법

모 집 대 상		주 수	주 당 모 집 가 액	모 집 총 액	비 고
모 집 (사 모)	모리츠 (우선주)	5,386,000주	5,000원	26,930,000,000원	현금
	계룡건설산업(주) (보통주)	1,708,400주	5,000원	8,542,000,000원	현금
	대한토지신탁㈜ (보통주)	600,000주 <sup>주1)</sup>	5,000원	3,000,000,000원	현금
합 계		7,694,400주 (100%)	-	38,472,000,000원	

주1) 2024.06.13. 회사 설립 시 출자한 발기인출자분 포함(대한토지신탁㈜, 60,000주)

#### 3.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4. 모집의 조건

항 목	내 용
모 집 주 식 의 수	7,694,400주(*)
주 당 모 집 가 액	5,000원(증자시 발행가액,액면가액 5,000원)
청 약 단 위	1 주
청 약 기 일	2024년 월 일
청 약 증 거 금	-
납 입 기 일	2024년 월 일
배 당 기 산 일 (결 산 일)	매년 12월 31일 설립년도 : 회사 최초 설립일 (2024년 05월 02일) (**) 청산년도 : 당해 회사 청산일

\* 2024. 06. 13. 회사 설립시 출자한 발기인출자분(대한토지신탁주, 60,000주)을 제외한 주식수임

\*\* 당해 회사의 최초 설립일은 2024년 06월 13일이며, 제 1기 회계연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5. 모집의 절차

##### 가.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라, 모리츠 등 그 밖에 동법 시행령이 인정하는 주주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하도록 하여 사모로 진행될 예정인 바, 공고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각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청약 일정이 통보됩니다.

##### 나. 청약방법

- 1)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면제됨)
- 2)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 가능하며, 최저 청약한도는 1주이며,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주식수 100,000,000주의 범위 내로 합니다.
- 3) 청약은 2024년 월 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 청약취급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 리츠의 자산보관사 본점)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1) 당해 회사는 기명식 우선주식수 5,386,200주를 모리츠에 출자비율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2) 당해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 총 모집주식수 2,308,400주를 계룡건설산업(주), 대한토지신탁(주)에 출자비율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후 즉시 주권을 발행합니다. 단, 당해 회사는 인수인과 협의에 의하여 주권보관증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모집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교부일 이전에 주식 양도 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인인 주주가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납입일 및 주금납입장소

2024. .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서 납입

라. 기타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Ⅱ.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1. 주식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신주발행을 사모형식으로 모집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 제1항, 제26조의 2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되기 전까지는 환금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해 회사는 사업계획상 실제 건설 및 운영기간 156개월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금성 및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기타 중요한 사항

가. 당해 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후 신주모집이 완료 되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의 “최저자본금준비기간”내에 최저자본금이 준비완료 되었음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의 인수청약예정자는 당해 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주주의 인수청약이 있는 주식의 수가 회사 신주 발행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는 실권주 배정을 위하여 납입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42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투자는 관련 법령상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주주인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투자자 이외의 어떠한 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당해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1)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의 위험
- 2) 부동산 자산의 매입, 운용, 처분 관련 위험(소유권 제한의 위험, 물리적, 기술적 하자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의 위험, 임차인의 신용 위험, 공실 위험, 관리비용 증가 비용, 역부채효과위험,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등)
- 3) 환금성 및 유동성 관련 위험(환금성 등 주식 관련 위험, 유동성 관련 위험)
- 4) 회사 경영 및 운영 등 기타 위험(대리인 및 이해상충 관련 위험, 제도 변화 관련 위험, 현금 및 증권의 운용관련 위험)

상기 투자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투자설명서 「제2부 「Ⅲ.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 의 「3. 투자와 관련된 위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 회사의 개황

#### 1. 회사의 사업목적

가. 명 칭 : 주식회사 계룡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나. 설립일 : 2024. 06. 13.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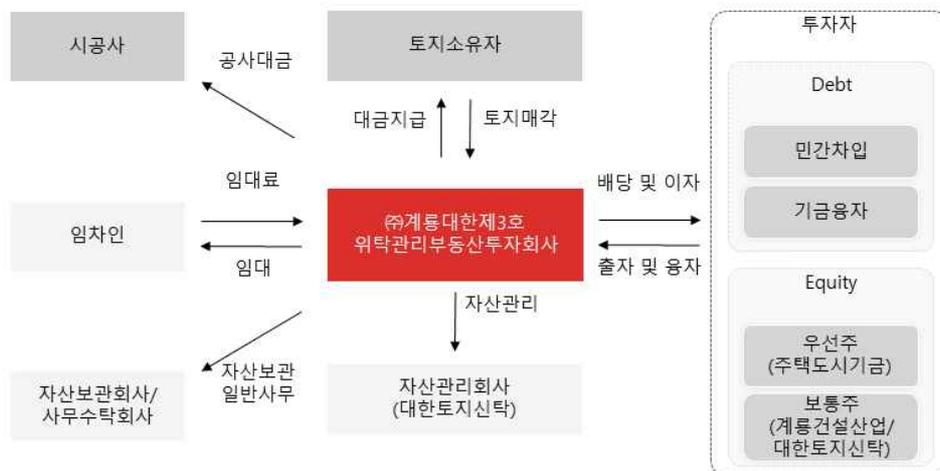
#### 2. 회사의 설립취지 및 그 성격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모리츠(주택도시기금), 계룡건설산업(주), 대한토지신탁(주)가 우선주와 보통주 주주로 참여하고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축, 임대 운영, 관리,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정책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회사는 임대주택 전체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초기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으로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및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공급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3. 회사의 구조

당해 회사의 자산은 자산관리회사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의하여 운용될 것이고, 엔에이치투자증권(주)이 자산보관회사로서 현금 및 증권의 보관, 현금자산 운용지시의 이행,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보전관리업무를 담당할 것이며, (주)신한펀드파트너스가 일반사무수탁회사로서 회사의 운영 및 계산에 관한 사무, 주식발행사무 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해 회사의 구조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 4. 주식에 관한 사항

발행할 주식의 총수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행가액
7,694,400주*	7,694,400주	1주당 5,000원

\* 2024.05.02. 회사 설립 시 출자한 발기인출자분(대한토지신탁㈜, 60,000주)을 포함한 것임

#### 5.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주주명부의 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주권의 종류	기명식 우선주 및 보통주
정기주주총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고게재 신문	머니투데이(2개 이상 공고 시 머니투데이, 매일경제신문)
명의개서 대리인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정 가능

\* 단,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2024.05.02.)로부터 2024.12.31.까지임

#### 6.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 가. 존속기간

회사는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의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 청산할 수 있습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2호에 의거함) 단, 당해 회사는 회사 설립시 사업계획상 투자대상 부동산을 건설한 후 10년을 운영하고(건설기간 24개월) 시장매각을 한 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회사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당해 주주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2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게 됩니다.

#### 나. 해산사유

당해 회사는 정관 제5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게 됩니다.

- 1) 존립기간을 정한 경우 그 존립기간의 만료
-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 3) 합병
- 4) 파산
-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 6)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 7. 주식환매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는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당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환매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과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II. 발기인·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1. 발기인에 관한 사항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요경력 또는 연혁	비고
대한토지신탁(주)	110111-0978267	- 1997. (주)주택공제부동산신탁 설립 (주주 : 주택공제조합(現 주택도시보증공사)) - 1999. 상호 변경 - 대한토지신탁(주) - 2001. 주주 변경 (주택공제조합 → 군인공제회) - 2013. 자산관리회사(AMC)설립(겸업)인가 - 2017. 납입 자본금 350억 증자 (現 자본금 총 1,100억원) - 2023. 제9대 대표이사 박종철 취임	

### 2.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직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 경력	비고
대표이사	김택중	640808-*****	現 계룡건설산업(주)	-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일	760207-*****	現 계룡건설산업(주)	-
기타비상무이사	전지훈	790301-*****	現 계룡건설산업(주)	-
감사	가태영	720507-*****	現 도영회계법인	-

### 3.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에서 매 회계연도 별로 결정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할 것입니다.

### Ⅲ.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

본 투자설명서의 투자방침 및 이익 등의 분배방법에 관한 사항은 장래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하거나 실현 가능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경제상황이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당해 회사는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투자대상 부동산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 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모리츠 등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자산은 시장여건 및 입주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계속 임대 혹은 분양전환을 통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 가격은 자산실사 및 평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당해 회사의 부동산 건설, 매입, 임대, 운영사업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의 매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할 계획이며, 부동산의 건설, 매입, 임대, 운영, 관리, 처분 등의 업무를 대한토지신탁(주)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기타 여유자금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대한토지신탁(주)을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상 자산을 취득하여 임대운용하고, 사업에 투입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공채의 매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소속 임직원이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 가. 투자대상 부동산의 매입 및 건설

- 1) 당해 회사가 투자할 부동산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지구 A-3BL 일원에 시공 예정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구분	소재지	용도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주거시설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지구 A-3BL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25,016.00	85,216.73

입니다.

건설가격 <sup>주1)</sup> (백만원)	평가기관	시세조사 감정가(백만원) <sup>주2)</sup>	시세조사 감정가액 대비(%)
151,631	한국부동산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세조사결과서(2024.04)	156,692	96.77%

주1) 건설가격 : 토지비, 건설비, 자본화금융비용의 합계로 건설 원가에 해당함

주2) 시세조사 감정가액은 「한국부동산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세조사결과서(2024.04.)」 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감정가격의 합임

- 2) 투자대상 부동산은 공동주택 5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건설 후 10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 예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한 '시세조사서'로부터 임대료 등의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3) 영업인가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상기 부동산 건설 후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고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나. 부동산의 운영 및 관리

- 1) 당해 회사의 자산관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인가받은 대한토지신탁(주)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 2) 원활한 임대운영 후 매각을 위해 대한토지신탁(주)를 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자산관리 및 매각업무 등을 위탁할 계획이며, 사업기간 내 임대관리는 전문임대관리업체와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다. 부동산의 처분

- 1) 당해 회사는 한시적인 명목 회사로 청산시점에 배당 가능한 사업수익률을 확보하여야 하나 임대기간 종료 후 부동산에 매각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계획적인 매각전략을 세워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 2) 10년 임대운용 종료 후 당 회사는 시장여건 및 입주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계속 임대 혹은 보유한 주택을 전세대 매각하여 출자자 배당 및 차입금 상환을 실행합니다. 매각은 분양전환 및 일반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가격은 자산실사 및 평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 3) 매각 시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 ① 당해 부동산의 현황 및 거래비용
  - ②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 ③ 당해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④ 그 밖에 당해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주요 투자대상 및 사업운영계획

### 가. 투자금액 및 재원조달금액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sup>주1)</sup>	합 계	구성비
총사업비 (필요재원)	토지관련비용	14,564	26.05%
	건설관련비용	131,441	46.03%
	리츠운용비용	25,313	4.50%
	부동산관리비용	13,000	5.54%
	금융비용	25,313	17.88%
	<b>합 계</b>	<b>192,358</b>	<b>100%</b>
재원조달	우선주자본금	26,930	13.65%
	보통주자본금	11,542	6.35%
	임대보증금	40,922	33.49%
	기금융자	71,400	15.55%
	민간조달	41,565	30.96%
	<b>합 계</b>	<b>192,359</b>	<b>100%</b>

주1) 본 분석에서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함에 있어 반올림 차이는 합계에서 조정하지 아니함

- 1) 당사의 자산운용은 부동산과 현금(건설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및

기타 현금) 등으로 운용될 계획이며, 부동산의 임대, 관리, 매각 업무와 현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자산관리회사인 대한토지신탁(주)을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 2) 본 부동산 자산운용의 기본 방침은 부동산 매입, 건설, 임대, 매각, 상환으로 대별되는 바, 첫째, 영업인가 후 증자 및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매입자금 및 부대비용 등은 우선주인 모리츠(주택도시기금), 보통주인 계룡건설산업(주), 대한토지신탁(주)의 참여를 통한 출자, 일반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둘째, 임대기간 종료 후 자산은 시장여건 및 입주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계속 임대 혹은 분양전환을 통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매각가격은 자산실사 및 평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3) 당사는 상기 구조로 부동산 매입, 임대, 매각하여 출자자 배당 및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나. 투자대상자산

공급대상	구분	분양면적 (㎡) (a)	세대수		전용면적 (㎡) (b)	발코니 확장면적 (㎡) (c)	실사용 면적 (㎡) (b+c)	전용률 (%) (b/a) ×100
			호	실				
일반공급	아파트	111,1083	346	346	84.9790(84A)	38.2743	123.2533	76.71
		111,4042	62	62	84.9835(84B)	32.1415	117.1250	76.51
	계	-	408	408	-			
특별공급	아파트	111,1083	81	243	84.9790(84C)	38.2743	123.2533	76.71
		111,4042	21	63	84.9835(84D)	32.1415	117.1250	76.51
	계	-	102	306	-			
상가		231.8429	1		210.6000	-	210.6000	90.84
특별공급세대수(호)(d)			102		X			
전체 임대주택 공급세대수(호)(d+f)			510					
특별공급비율(%) $[d/(d+f)]$			20%					

- 1) 투자대상자산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지구 A-3BL 일원에 건설 예정인 주거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2) 투자대상 부동산은 공동주택 5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건설 후 10년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 예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시세조사서'로부터 임대료 등의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3) 영업인가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상기 부동산 건설 후 부

동산투자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고 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다. 투자제한

##### 1)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일반원칙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 취득·임대차 및 증권의 매매·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 2) 부동산에의 투자 및 운용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취득 또는 처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 3) 여유자금 운영

회사는 부동산 매입, 건설, 운영사업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은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운용방침을 정하여 대한토지신탁(주)를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라. **재원조달금액 및 상세내역**

1) **자본금 및 차입금**

회사는 자본금의 100%를 보통주, 우선주로, 자본금의 배액의 상당액을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단, 회사의 자본금 2배 초과 10배 이하의 차입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요구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원조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조달 구조>

구분	항 목		금액(백만원)	비율	
자금조달	자기 자본	우선주*	26,930	14.00%	
		보통주	11,542	6.00%	
	타인 자본	차입금	보증부대출	41,565	21.61%
			기금융자(HUG)	71,400	37.12%
		임대보증금**	40,922	21.27%	
	<b>합계</b>		<b>192,359</b>	<b>100.00%</b>	

\* 1. **운영수익 배당**

- ① 모리츠 우선주의 내부수익률(IRR)은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6%이하인 경우 3% (중간배당 시 2.7%)에 달할 때까지,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1%p 상승 시마다 기금 내부수익률도 0.2%p 상향하여 배당(해당연도의 운영배당률이 미달할 경우 차기 누적배당)
- ② 보통주에 대해 잔여 운영수익 배당

2. **청산수익 배분**

- ① 모리츠 우선주의 누적된 미 배당금 배당
- ② 모리츠 우선주의 내부수익률(IRR)은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6% 이하인 경우 3% (중간배당 시 2.7%)에 달할 때까지,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1%p 상승 시마다 우선주 내부수익률도 0.2%p 상향하여 배당
- ③ 주택가격 상승률이 HUG 내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초과 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의 배당은 HUG 내규에 따라 배당
- ④ 보통주에 대하여 잔여재산 배분
  - ※ 청산 전 매각하는 경우 청산배당 절차를 준용하며, 세부사항은 사업약정 체결시 확정 예정

\*\* **임대보증금**

회사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임차인 모집을 통해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본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3. 투자와 관련된 위험

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위험은 크게 첫째,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위험, 둘째, 부동산의 운용 위험 셋째, 부동산의 처분 위험 넷째, 회사의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위험으로 구분됩니다.

#### 가. 자산운용위험 관리계획

##### 1) 투자대상 자산 취득 관련

- 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동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경제적 위험으로 구분되며 당해 회사는 이와 관련된 위험이 부동산 매입 및 기타부대비용 집행 등에서 적극적으로 회피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② 당 사업지는 사업제안자의 매입예정 부동산으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 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 이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 ①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실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개선비용 및 관리비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 ② 동 사업은 주변 아파트 임대료 및 시세 대비 전세가율 및 월세전환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적용하여, 운영기간 중 공실위험을 최소화하여 임대위험을 낮출 계획입니다.
- ③ 부동산 취득 및 운용상의 각종 제비용의 종류와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및 임대차 계약에서 이를 면밀히 정할 계획이므로 비용증가에 따른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④ 임차인의 신용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취할 예정으로, 임차인의 신용위험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부동산 자산 처분 관련

- ① 당해 회사는 한시적 법인으로 청산시점에 첫째, 부동산의 처분위험과 둘째, 처분시 시장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 ② 첫째, 당해 회사는 한시적 명목회사로서 존속기간 동안 효율적 자산관리와 함께 청산시점에서의 용이한 부동산 처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자산을 시장여건 및 입주자 선호도를 파악하여 계속 임대 혹은 분양전환을 통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 ③ 둘째, 처분시 시장위험과 관련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자산실사 및 평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분양전환 및 시장매각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격으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운용 8년차 이후부터 계획적인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시장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우선주 및 보통주의 자기자본수익률(매각차익 포함) 및 연평균이익배당률(매각차익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민감도 (주택가격상승률, %)	보통주		우선주		주주(보통주+우선주)	
	배당액	IRR	배당액	IRR	배당액	IRR
-2.00%	(22,903)	-	(26,930)	-	(49,833)	-
-1.50%	(14,846)	-	(26,930)	-	(41,776)	-
-1.00%	(11,542)	-	(21,685)	-11.68%	(33,227)	-14.04%
-0.50%	(11,542)	-	(12,618)	-4.69%	(24,160)	-7.23%
0.00%	(11,542)	-	(3,002)	-0.89%	(14,544)	-3.54%
0.50%	(11,542)	-	7,191	1.81%	(4,351)	-0.91%
1.00%	(7,296)	-7.31%	13,748	3.18%	6,452	1.18%
1.50%	4,150	2.36%	13,748	3.18%	17,898	2.94%
2.00%	16,273	6.91%	13,748	3.18%	30,021	4.48%
2.50%	25,263	9.20%	17,596	3.89%	42,859	5.85%

\*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아파트 연 0.81% 미만부터 기금 우선주 목표 IRR 3.00% 달성 불가

\*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아파트 연 0.15% 미만부터 기금 우선주 출자원금 손실 발생

\*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아파트 연 2.18% 초과부터 주주 IRR 5.00% 달성 가능

#### 4) 현금 및 증권의 운영

- ① 현금 및 증권 운용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나 임대료수취누적액과 사내 유보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취득하는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해 회사가 현금 및 증권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위험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 ② 즉, 현금 및 증권의 운용수익의 증감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금융 시장의 질적 변화,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금리의 변동에 좌우될 것입니다.
- ③ 따라서 동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한 바, 당해 회사는 현금 및 증권의 운용방침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운용원칙은 배당지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④ 또한 여유자금은 목표금리 이상으로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하고 주요 운용대상으로서 금리하락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에는

국공채 및 고정금리부 예금자산, 금리상승이 일정기간 예상될 때는 변동금리부 예금자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나. 회사 경영 및 운영 위험 관리계획

### 1) 환금성 등 주식 위험 관련

- ① 당해 회사는 주주에게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존속기한 동안 배당 수익을 분배할 계획입니다
- ② 그러나 당해 회사는 첫째, 폐쇄형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원칙상 환매가 제한되므로 이에 따른 환금성 위험과 둘째,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2) 유동성 관련 위험

- ① 당사의 주식은 비상장 예정이므로, 장외거래를 통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보유주식의 매각이 가능합니다.
- ② 당사 주식의 매각 시에 매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대하는 가격에 매각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단시일 내에 매각을 원하는 경우 기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③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동성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 3) 대리인 및 이해상충위험 관련

- ① 당사는 명목 회사(Paper Company)로서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대리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② 이들 위탁회사들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나 역량 부족과 업무 태만이 나타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독자적인 업무 및 이익창출 활동을 더 우선시 할 경우 당사와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따라서, 이러한 대리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위탁업무회사와의 계약해지 및 퇴출기준을 각 위탁계약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며,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과 감사인 제도를 두어 당해 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간 이해상충 소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 4) 제도변화 위험 관련

- ① 당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 ② 추후 불가피하게 법 개정과 제도변화가 있을 경우 회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률이 변동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4. 투자제한

##### 가.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일반원칙

회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취득·임대차 및 증권의 매매·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기준 등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 나. 부동산에의 투자 및 운용

- 1) 당해 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및 운용해야 합니다.
  - ①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 ② 부동산개발사업
  - ③ 부동산의 임대차
  - ④ 증권의 매매
  - ⑤ 금융기관에의 예치
  - ⑥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관리·처분
  - ⑦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의 취득·관리·처분
  - ⑧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2)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한토지신탁(주)에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취득 또는 처분의 결정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3) 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자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정기준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 다. 증권에의 투자 및 운용

- 1)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①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②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③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④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회사는 전1)항 제②호 내지 제④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때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전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제·지방채,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이 정하는 증권은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4)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전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전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여유자금의 증권 투자는 당해 회사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합니다.

#### 라. 거래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각호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 ② 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별관계자
- 2) 전1)항의 제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전1)항 제①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 ③ 회사의 합병, 해산,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불가피한 거래
  - ④ 이사회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3)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와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 ②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 ④ 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을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 ⑥ 회사의 이사회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5. 이익 등의 배당방법

### 가. 배당가능이익

일반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은 자산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서 부동산 운영관련 비용 및 부동산투자회사 운영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게 됩니다.

### 나. 배당정책

당해 회사는 당해 회계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별 초과배당액은 당해 회계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감가상각비의 100% 전액을 배당하며, 필요시 이사회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익 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정관 제48조(사업연도)에서 정한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해 회사가 목표로 하는 배당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기간		기금우선주		민간보통주		주주전체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1기	'24.12	-	-	-	-	-	-
2기	'25.12	-	-	-	-	-	-
3기	'26.12	-	-	-	-	-	-
4기	'27.12	-	-	-	-	-	-
5기	'28.12	-	-	-	-	-	-
6기	'29.12	-	-	-	-	-	-
7기	'30.12	-	-	-	-	-	-
8기	'31.12	-	-	-	-	-	-
9기	'32.12	-	-	-	-	-	-
10기	'33.12	-	-	-	-	-	-
11기	'34.12	-	-	-	-	-	-
12기	'35.12	-	-	-	-	-	-
13기	'36.12	-	-	-	-	-	-
14기	'37.12	13,748	51.05%	16,273	140.98%	29,751	78.03%
합계	운영배당	-		-		-	
	매각배당	13,748		16,273		30,021	
내부수익률 (운영)		13,748		16,273		30,021	
내부수익률 (운영+매각)		0.00% (51.05%)		0.00% (140.98%)		0.00% (78.03%)	

## 다.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 후 당해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6. 자산평가 및 공시방법

### 가. 자산평가방법

당해 회사의 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1) 부동산의 경우 :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증권의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봅니다.
- 3)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의 경우 :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4) 기타 자산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에 의하는 방법

### 나. 공시방법

- 1) 산출주기 : 주당순자산가치는 매 분기별로 계산합니다.
- 2) 공시시기 : 공시는 투자보고서를 통해 매 분기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가치의 현저한 변화 등 필요시에는 즉시 공시합니다.
- 3) 공시방법 :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본점에 공시됩니다.
- 4) 공시장소 : 대한토지신탁(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주)신한펀드파트너스

### 제3부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I.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 대한토지신탁(주)

나. 대표자 : 박 중 철

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라. 연혁

년도	내 용
1997. 12.	(주)주택공제부동산신탁 설립
1999. 06.	사명변경 - 대한토지신탁(주)
2001. 05.	대주주 변경 (대한주택보증 → 군인공제회)
2008. 04.	자회사 애플러스자산운용 설립
2009. 02.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신탁업) 인가
2013. 09.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인가
2017. 09.	납입자본금 350억 증자 (총 1,100억원)
2023. 05.	제9대 대표이사 박중철 취임

##### 2.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 가.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2 결산
<b>I. 자산</b>	<b>768,672,617,305</b>	<b>537,569,319,199</b>
현금및예치금	26,125,780,993	53,439,653,495
유가증권	82,234,586,802	71,288,206,898
대출채권 등	637,951,370,830	391,012,307,835
재고자산		
유형자산	4,378,549,145	7,000,043,061
투자부동산		
기타자산	17,892,329,535	14,829,107,910
<b>II. 부채</b>	<b>375,870,069,274</b>	<b>160,171,723,751</b>
차입부채	337,675,000,001	107,900,000,000
기타부채	38,195,069,273	52,271,723,751
<b>III. 자본</b>	<b>392,802,548,031</b>	<b>377,397,595,448</b>
자본금	110,000,000,000	110,000,000,000
기타	282,802,548,031	267,397,595,448

## 나.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결산	2022년 결산
영업수익	110,100,829,941	96,542,873,667
영업비용	89,194,334,192	48,497,190,915
영업이익	20,906,495,749	48,045,682,752
영업외수익	20,748,450	1,272,730
영업외비용	1,410,500,000	1,327,089,500
당기순이익	14,895,113,714	33,395,254,321

### 3. 자산운용 현황(2024.02.29 영업인가 기준)

명칭	영업인가	존속기한	투자대상	총자산	자본금	배당률
(주)대한제1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5.08.20	150개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곶집말지구 A1블록 1로트 일원 32개동 2,400세대 아파트	8,416억	2,524억	-
(주)에미지뉴스테이기업형 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5.09.25	129개월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 Ab-04BL 17개동 1,770세대 아파트	6,544억	1,309억	-
(주)엘티대한제2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5.12.29	125개월	화성시 동탄면 제2동탄 신도시 A-95BL 612세대 아파트	2,453억	480억	-
(주)엘티제1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03.30	128개월	화성시 반월동 111번지 일원	4,269억	1,280억	-
(주)대한제5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06.28	124개월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13BL 일원	3,632억	726억	-
(주)엘티대한제3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06.28	118개월	김포시 한강신도시 AB-22BL 일원	3,767억	753억	-
(주)대한제4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08.31	129개월	화성시 기산동 150번지 일원	4,301억	1,126억	-
(주)힐스테이트봉담대한제6호뉴 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09.29	123개월	화성시 화성봉담2지구 B-3BL 일원	3,428억	686억	-
(주)계룡대한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09.29	124개월	시흥시 능곡동 일원	2,411억	482억	-
(주)대한10호뉴스테이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12.30	123개월	남양주 별내지구 A1-5BL	2,074억	415억	-
(주)우미대한9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12.30	165개월	동탄(1)지구 2단계 연립1BL 외 2개블럭 한옥(단독, 연립)	3,628억	726억	-

(주)미추8대한7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12.30	176개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39-17 일원	5,788억	1,159억	-
(주)대한11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12.30	125개월	경기 고양지축 B-7BL	1,720억	344억	-
(주)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6.12.30	148개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원	9,197억	1,840억	-
(주)계룡대한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7.04.03	155개월	경남 김해시 율하2 A-2BL	2,373억	475억	-
(주)우미대한제12호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7.04.03	155개월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A-15BL	2,712억	542억	-
(주)용산대한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7.11.23	142개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원	3,751억	752억	-
(주)대한제2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02.21	41개월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울산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37 소재)	1,599억	368억	-
(주)대한제16호고덕아울럼뉴스테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03.02	128개월	평택시 고덕지구 A-11BL	2,827억	566억	-
(주)서희대한스타힐스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8.11.16	156개월	시흥시 장현지구 B-2BL	3,411억	682억	-
(주)대한제22호평택고평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9.01.03	128개월	경기도 평택시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1BL	5,490억	1,098억	-
(주)이베테스타대한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9.04.12	137개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8번지	2,285억	458억	-
(주)양원어울림대한제1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19.05.01	152개월	서울 양원지구 C-3BL	1,031억	205억	-
(주)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0.02.05	154개월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지구 A-5BL	2,416억	483억	-
(주)한신대한제1호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	2020.02.18	153개월	인천 김단신도시 AB5BL 일원	3,782억	756억	-
(주)제일풍경채대한제24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0.02.18	156개월	하남시 감일지구 B-8BL	4,801억	960억	-
(주)대한제30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0.08.14	48개월	경기도 이천시 도립리 물류창고	824억	248억	-
(주)우미대한제2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0.10.21	134개월	인천광역시 김단지 AB-9BL	2,698억	540억	-
(주)대한제29호과주금촌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1.01.13	150개월	경기도 파주시 금촌	2,086억	417억	-

(주)제일풍경채대한제3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1.01.22	156개월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B-8BL	4,848억	970억	-
(주)전도관대한제3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1.06.24	179개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의동 109-119일원	3,807억	720억	-
(주)대한제36호오피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1.08.30	18개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KT지사 오피스	1,426억	438억	-
(주)엘티대한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1.10.20	159개월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 사송 B-9BL	3,102억	621억	-
(주)대한제3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022.01.04	162개월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7-1,368-7	843억	346억	-
(주)케이알대한이천제35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02.08	151개월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7번지 일원	1,677억	337억	-
과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06.15	178개월	과주시 와동동 1472-1번지 일대 (과주운정신도시 1,2 지구 F1-MBL)	3,030억	606억	-
(주)대한제40호평촌리테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11.29	88개월	홈플러스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9-3)	1,464억	754억	-
(주)노랑진케이미트대한제4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01.16	176개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9-6외 6필지	5,240억	1,049억	-
(주)대한목동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01.25	142개월	서울 중랑구 목동 8번지	2,393억	479억	-
(주)상봉대한제4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06.05	156개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6-49번지 외	1,337억	267억	-
(주)울산반구대한제45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10.30	157개월	울산광역시 반구동	1,647억	262억	-
(주)이베데스다대한제5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11.01	157개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번지	2,335억	468억	-
(주)우미대한제3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12.08	160개월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5BL	4,736억	947억	-
(주)하월곡동대한제4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4.02.16	157개월	서울 성부구 하월곡동 80-55번지	1,068억	214억	-
(주)이베데스다대한제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4.02.23	163개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425번지 외 3필지	1,345억	269억	-
(주)인천간석대한제49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4.07.04.	160개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73-2번지 외 10필지	2,109억	422억	-

#### 4.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근무기간)	비고
서도원	68.12.24	대졸 (도시행정학)	효성('95.01~) 대한토지신탁('14.02~)	-
김용진	76.02.10	대학원졸 (법학박사)	대한토지신탁('02.03~)	-
임지현	73.10.23	대학원졸 (건축학)	우림건설('06.06~) 대한토지신탁('15.03~)	-
조성우	77.05.10	대졸 (공학학사)	포스코건설('10.12~) 대한토지신탁('16.06~)	-
이상범	81.10.23	대졸 (공학경영학)	대한토지신탁('07.01~)	-
권세환	81.05.24	대졸 (법학)	대한토지신탁('08.02~)	-
김근석	82.05.30	대학원졸 (금융공학)	솔로몬저축은행('09.11~) 대한토지신탁('15.03~)	-
정희진	86.01.08	대졸 (부동산학)	신영자산관리('14.02~) 대한토지신탁('19.07~)	-
원대한	93.02.04	대졸 (도시공학)	대한토지신탁('18.12~)	-
이경민	75.01.01	대졸 (불어불문학)	대한토지신탁('97.12~)	
신하늘	96.12.28	대졸 (건축공학)	대한토지신탁('19.06~)	
안정호	83.10.04	대학원졸 (경영학)	한영회계법인('16.03~) 대한토지신탁('17.02~)	
윤상훈	79.05.05	대졸 (공학사)	금호산업('05.07~) 대한토지신탁('20.03~)	
이원재	94.09.01	대졸 (도시계획부동산학)	대한토지신탁('21.01~)	
우진영	92.08.17	대졸 (부동산학)	에스엘플랫폼('17.04~) 대한토지신탁('21.07~)	
김재희	82.11.01	대졸 (세무회계학)	티시스('09.12~) 대한토지신탁('22.07~)	
신동주	89.02.02	대졸 (경제학)	자이에스엔디('17.03~) 대한토지신탁('22.07~)	
장철웅	90.02.22	대졸 (경영학)	대한토지신탁('18.12~)	
김태형	86.05.29	대졸 (건축공학)	금호건설('18.06~) 대한토지신탁('22.07~)	
김태우	95.09.16	대졸 (건축공학)	KT투자운용('21.09~) 대한토지신탁('23.08~)	
김승준	94.01.31	대졸 (중국지역학)	한국자산캐피탈('22.07~) 대한토지신탁('23.08~)	
정종선	88.02.14	대졸 (부동산학)	대한토지신탁('20.03~)	
신동엽	88.07.04	대졸 (부동산학)	디엘이앤씨('20.12~) 대한토지신탁('22.03~)	
문광선	88.02.05	대졸 (회계학)	우리펀드서비스(15.05~) 대한토지신탁(22.03~)	
정상은	93.01.03	대졸 (건설공학/도시환경공학)	대한토지신탁(21.01~)	
장병준	95.08.14	대졸 (기술경영학)	현대자산운용(21.09~) 대한토지신탁('22.03)	
김창원	91.04.20	대졸 (경영학)	우리펀드서비스(19.08~) 대한토지신탁(23.08~)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임.

## 5. 자산관리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기간 : 자산관리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자산관리위탁계약 제 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중도 해지되거나 위탁자가 청산종결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리츠의 청산등기일까지로 합니다.

### 나. 자산관리위탁보수

1)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제 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중도 해지되거나 위탁자가 청산종결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리츠의 청산등기일까지로 합니다.

2) 위탁보수:

(가) 운용보수

: 최초 유상증자일부터 청산등기일까지 연 삼억육천만원(360,000,000원/년 부가세 별도)

① 건설 기간(31개월 예정)

: 매분기 금 구천만원(90,000,000원, 부가세 별도)

② 임대 기간(126개월 예정 / 분양전환기간 및 청산기간 포함)

: 매분기 금 구천만원(90,000,000원, 부가세 별도)

3) 보수의 지급방식 : 매분기 말일 지급하며, 당해 분기 수탁자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분기 수수료는 실제 업무 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라. 주요업무

자산관리회사는 본 리츠가 위탁하는 자산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범위 및 내용의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단, 본 리츠가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주택임대관리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는 자산의 고유한 과실이 없는 한, 주택임대관리회사의 업무수행상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자산(부동산, 증권,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자산의 운용 및 관리 등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초안, 차입 및 사채발행계획의 작성 및 제공

2) 부동산의 개발

① 본 리츠를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계획서 작성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의 평가 위탁 등을 포함한 본 리츠의 주주총회 결의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공 및 사

전 대 감독관청 협의

- ② 본 리츠를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설계 및 인허가절차 진행
- ③ 본 리츠의 의사결정(관련 법령 및 본 리츠의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지원
- ④ 본 리츠를 위한 부동산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본 리츠 명의의 계약 협의 및 체결 업무 협조
- ⑤ 본 리츠를 위한 시공사와 도급계약체결, 공정관리계약, 설계용역계약, 감리(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계약 체결 등 관련 계약의 체결 업무
- ⑥ 본 리츠를 위한 시공사 선정
- ⑦ 본 리츠를 위한 자금 및 예산관리(Financial Management)
- ⑧ 본 리츠를 위한 분양 및 임대 관리
- ⑨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 ① 부동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본 리츠의 의사결정(관련 법령 및 리츠의 정관에 따른 리츠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말하며, 이하 같다)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자료(실사보고서 포함) 등의 제공
- ②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본 리츠의 의사결정 지원
- ③ 부동산 취득에 관한 리츠의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체결 업무
- ④ 부동산 처분에 관한 리츠의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체결 지원 업무
- ⑤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본 리츠 명의의 계약체결 업무
- ⑥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자산운용관리지침상에 명시된 업무

4) 본 리츠의 부투법상 영업인가 또는 등록,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승인 신청 지원

5) 부동산의 임대차

- ①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협상, 계약체결 및 변경, 해지에 관한 업무
- ②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체결 및 사후관리업무(임대료 및 임대차보증금의 청구, 임대부동산의 보수의 청구, 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③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6) 증권의 매매

- ① 본 리츠의 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본 리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자료 등 제공
- ② 본 리츠의 증권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본 리츠의 의사결정에 따른 계약체결

- ③ 상기 ①, ② 이외의 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
  - ④ 기타 본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 7)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업무 위탁
  - 8) 매 분기, 결산기 투자보고서(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주주구성 및 주요 주주현황, 자산 구성현황 등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함) 작성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투자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 9)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가 신청, 보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
  - 10) 리츠 주식발행시의 주관회사 등의 선정(필요한 경우)과 투자설명서 작성자료 제공
  - 11) 리츠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실무 사무의 수행
  - 12)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자산실사(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기관의 선정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대행
  - 13)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기타 본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자산운용관리지침에 명시된 업무
  -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에 따른 차입에 관한 업무
    - ① 차입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 ② 차입에 관한 계약서를 협상하고 작성하며 체결하는 업무
    - ③ 차입과 변제에 관한 실무 처리
    - ④ 기타 차입에 필요한 업무
  - 15) 기타 위탁받은 업무와 자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업무

## II. 자산보관기관에 관한 사항

### 1. 자산보관기관의 개요

가. 명 칭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기준 : 2023.12.31 기준)

주요주주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	비고
농협금융지주	188,452,535	56.82	보통주 기준
기타	143,213,386	43.18	보통주 기준
계	331,665,921	100.00	

라. 고객 및 수탁고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연도		
		2021	2022	2023
신탁가액	수탁고	413,302	481,628	456,619
	계약수	55,445	47,119	72,541

### 2.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가. 계약기간 :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일 또는 본 계약 제29조에 따른 중도 해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나. 위탁보수

1) 건설 기간 : 연간 금 삼천팔백만원(₩38,000,000.- / 부가세 별도)

2) 임대 기간 : 연간 금 삼천팔백만원(₩38,000,000.- / 부가세 별도)

3) 보수의 지급방식 : 해당 분기 종료 후 수탁자의 (7)영업일 이내에 지급.

단, 당해 분기의 수탁자의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분기의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주요 업무

1) 부동산의 보관 및 관리

- ① 리츠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의 보존 및 보관
- ② 리츠의 의사결정 및 자산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리츠가 보유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한 등기 이전 시 신탁 등기 해지
- ③ 본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의 기재사항 변경업무
- ④ 본건 부동산의 임차인 등의 요청에 의한 확인서 발급 업무
- ⑤ 위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부수되거나 필요한 업무

2) 증권의 보관 및 관리

- ① 증권의 양도 및 보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으로 지정된 증권은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 ② 증권에 관한 각종 권리 행사, 증권에 대해 인정되는 배당금, 원리금 기타 각종 금원의 수령
- ③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3) 현금의 보관 및 관리

- ① 현금의 수령, 지급 및 보관
- ② 제세공과금의 지급
- ③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
- ④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

4) 위탁자의 해산 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 필요한 자산보관에 관련된 업무

### Ⅲ. 사무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 1. 사무수탁회사의 개요

가. 명 칭 : (주)신한펀드파트너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여의도동, 현대차증권빌딩)

다. 자본금에 관한 사항

(기준: 2024.06.30)

주요주주	소유주식수(주)	소유비율(%)	비 고
신한금융지주	469,358 주	99.79%	-
계		99.79%	-

라. 고객 및 수탁고 현황

(단위: 억원, 기준: 2023.12.31)

구 분		연 도		
		2021	2022	2023
신탁가액	수탁고	5,760,000	6,459,437	7,143,611
	거래처 수	247	258	258

#### 2. 주요 계약 내용

가.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위탁사의 청산종결등기일 또는 계약 해지일까지

나. 위탁보수

(1) 개발기간 : 연간 금 삼천칠백만원(₩37,000,000원 / VAT 별도)

(2) 운영기간 : 연간 금 오천구백만원(₩59,000,000원 / VAT 별도)

다. 보수의 지급방식 : 해당 분기 종료 후 칠(7)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당해 분기의 수탁자의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90일을 기준으로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3. 주요 계약 내용

가.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

- ① 주주명부 및 이에 부수되는 장부의 작성 및 관리
- ②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질권의 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 ③ 주주에 대한 제반 통지

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 ① 주권의 발행 및 교부
- ② 예비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 ③ 증자 및 감자와 관련한 행정업무

다. 운영에 관한 사무

- ① 사업자등록의 관리, 등기 관련 업무
- ② 이사회 및 감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실무업무의 보조
- ③ 관련 수탁회사에 대한 보수의 계산, 통지 및 관리
- ④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업무
- ⑤ 회의의 준비, 진행협조 및 그 결과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⑥ 이사회, 주주총회의 회의록 및 의사록 작성 및 배포

라. 계산에 관한 사무

- ①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금전분배에 관한 계산서 등) 및 그 부속 명세서의 작성
- ② 재무보고서의 작성
  - 분기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의 작성
  - "감"의 요구 시 기별 손익 및 배당률의 산출
- ③ 회계계정(Chart of Account) 정립 및 관련 실무
- ④ 관련법령에 의한 매 분기 및 결산기 투자보고서 작성(상장될 경우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포함)
- ⑤ 운용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
- ⑥ 회계감사 수감. "을"은 외부회계감사 수감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입찰경쟁방식에 의거 제안 받은 후 관련자료를 자산관리회사에 통보하고, 자산관리회사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을"로 하여금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보관기관에 선정결과를 통지하도록 한다.
- ⑦ 회계자료의 보관
- ⑧ 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보관내역서와 장부상 보관자산과의 대조 및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마. 세무에 관한 업무

-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간주매출부가세의 계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업무 보조 (단, 세무대리 업무는 "감"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며 "을"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 업무지원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임원 보수, 용역료 등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업무보조
- ③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된 세무당국 등에 대한 신청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 보조
- ④ 기타 세무관련 업무는 자산관리회사와 협력하여 확인하며, 지정된 세무대리인의 세무업무에 대한 지원 보조

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업무 지원

- ①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주주, 채권자, 감독기관 등에 대한 통지 및 공시업무 지원
- ② "갑"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을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청자료 제공
- ③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 및 투자보고서의 비치, 공시 및 열람 제공
- ④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련법령에 따른 작성 및 비치
- ⑤ 감독기관 등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의 제출
- ⑥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자료의 작성 및 보고
- ⑦ 상기 "가"목 내지 "바"목의 업무 중 자산관리회사나 자산보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지 및 공시자료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책임은 면제된다.

사. 해산 및 청산 업무

"갑"의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일반사무와 관련한 실무사무

아. 상기 업무(제1호 내지 제7호)의 부수업무

- ① 본 계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소송업무
- ② 관련 수탁회사와 기타 "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협조
- ③ 자산관리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운용결과를 자산보관기관에 지시. 단, 자산관리회사가 자산보관기관에 직접적으로 운용을 지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다"목에 규정된 운용지시에 따른 증권 등의 운용결과 확인
- ⑤ 필요 시 임직원배상책임보험 등 일반사무와 관련된 보험 가입 업무
- ⑥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와 관련 하여 영문자료 작성의 업무(재무제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운영과 관련된 자료, "갑"또는 감독기관, 관련법령 등에 의한 보고서 등) 단,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자료 제공의 업무는 제외한다.

#### IV.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탁 업 무	담당회사	위탁보수(계획)
자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취득한 자산의 관리 등 자산운용에 관한 매 결산기의 사업계획 및 차입계획의 작성 및 제공</li> <li>- 부동산의 개발</li> <li>-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li> <li>- 부동산의 임대차</li> <li>- 증권의 매매</li> <li>- 필요한 경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업무 위탁</li> <li>-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매 분기, 결산기 투자 보고서 및 작성을 위한 관련자료 제공</li> <li>- 주식발행시의 주관회사 등의 선정(필요한 경우)과 투자설명서 작성자료 제공</li> <li>-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가 신청, 보고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li> <li>-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를 받아 자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실무 사무의 수행</li> <li>-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기관, 자산실사(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기관의 선정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의 대행</li> <li>-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기타 본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업무로서 자산운용관리지침에 명시된 업무</li> <li>- 차입에 관한 업무</li> <li>- 기타 위탁받은 업무</li> </ul>	대한토지신탁(주)	운용보수 : 360,000,000원/년(VAT별도, 분기별)
자산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의 보관 및 관리</li> <li>- 현금의 보관 및 관리</li> <li>- 부동산의 보관 및 관리</li> </ul>	엔에이치투자증권(주)	38,000,000원/년(VAT별도)
사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업무</li> <li>-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li> <li>- 운영에 관한 사무</li> <li>- 계산에 관한 사무</li> <li>- 세무에 관한 실무사무</li> <li>-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시업무</li> <li>- 해산 및 청산업무</li> </ul>	(주)신한펀드파트너스	1) 건설기간보수 : 37,000,000원/년(VAT별도, 분기별)  2) 운영기간보수 : 59,000,000원/년(VAT별도, 분기별)

## 제4부 기타 필요한 사항

### I.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의결권에 관한 사항

##### 가.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할 것입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당해 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 2. 배당에 관한 사항

##### 가. 배당가능이익

당해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계획이며(초과배당),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 정관 제5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 나. 배당정책

당해 회사는 당해 회계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별 초과배당액은 당해 회계연도 감가상각비 이내로 하되, 기본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감가상각비의 100% 전액을 배당하며, 필요시 이사회가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익 배당(초과배당 포함, 이하 같다)은 정관 제48조(사업연도)에서 정한 매 사업연도별로 이익배당을 위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당정책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수익률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다. 배당금 지급시기 및 결정방법

당해 회사의 최초 회계연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이 후 당해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종료할 계획입니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승인을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당사의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되며, 배당금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3.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청산하는 시점에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 모리츠 우선주의 기금 내부수익률(IRR)은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6% 이하인 경우 3%(중간배당 시 2.7%)에 달할 때까지, 보통주 내부수익률이 1%p 상승시마다 기금 내부수익률도 0.2%p 상승하여 배당, 2) 주택가격 상승률이 HUG 내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초과 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 배당은 HUG 내규에 따라 배분한 뒤, 3) 보통주에 대하여 잔여수익을 배분합니다.

## 4. 기타사항 (장부·서류의 열람)

당해 회사의 주주, 채권자는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을 영업시간 중에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II. 과세처리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에 대한 과세

#### 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 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며(단, 동법 제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의거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 나. 등록면허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액(또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같은 등록면허세에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를 “배당가능이익”이라고 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 및 세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할 경우 사실상 법인세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라.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 1) 재산세

부동산투자회사는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 100분의 60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 2) 지방교육세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5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3)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주주에 대한 과세

### 가. 배당소득

#### 1) 법인

내국법인이(비영리내국법인 제외) 해당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과세소득에 익금으로 포함됩니다.

#### 2) 거주자

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이내일 경우 완납적분리과세 (세율: 15.4%)로 종결됩니다.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8~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나. 양도소득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아닌 자가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것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기타사항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제2항 바호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77조 제2항에 의한 법인 균등할 주민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Ⅲ.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당해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소 : 137-737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연락처 : 교환 (02) 530-1114 (민원안내)

공탁소 : 민원 (02) 530-1707 / FAX (02)3477-8102 / 안내 (02) 533-6850

### Ⅳ.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이하 관련 수탁회사)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V. 기타 공시관련사항

### 1. 투자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회사의 개황, 자산의 구성현황 및 변경내역, 총수입금액·수입구조 및 수익률, 부동산 영업경비 등 지출에 관한 사항, 소유 부동산별 현황·가격·임대료 및 주요 임차인의 현황, 증권의 소유현황,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에 한하여 주주구성 및 주요주주의 현황, 차입에 관한 사항, 주가변동상황, 요약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진행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 분기 및 결산기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인가를 받은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할 것입니다.

### 2. 정관

당해 회사는 정관을 자산관리회사 본점과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것입니다.

### 3. 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는 자산관리회사 본점, 판매계약서는 판매회사 본점 및 지점, 자산보관 및 일반사무수탁계약서는 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본점에 비치할 것입니다.